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06호 2015. 08. 06.(목)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42호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주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0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정 입법 예고 ----- 6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08. 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 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다세대 및 연립주택)

기정				변경			
가구번호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50	3	1,767.9	4획지로 분할	50	3-1	855.0	
					3-2	912.9	

- 공동주택용지(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50	3-1	획지분할선의 변경	획지분할선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3-2		

5.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042호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00(2008.09.29.)호로 인천도시계획시설(석남완충녹지 3단계)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0번지 일원]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8. 0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지	사업규모(m ²)	사업시행자	비고
석남완충녹지 (3단계)조성사업	2008년 ~ 2017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0번지 일원	총 면 적 : 129,120 금회시행면적 : 9,49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추후 개별통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산정→보상협의(대면협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 보상금 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단,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 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08. 05 ~ 08. 19(초일 불산입 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560-449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대상 내역

- 토 지(세부내역 붙임 참조)

위 치	지 번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90-2, 190-3, 190-5, 208-2, 208-8, 209, 209-3, 210	

- 물 건(영업시설 등) : 붙임참조[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5. 기타사항

- 협의절차 및 방법 등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부재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공원녹지과(전화 560-4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편입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1] 편입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및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또는 명칭	주 소	성 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1	신현동	190-2	구거	도로	407	194	자연녹지지역	김○옥	인천광역시서구율도로66번길 18, 가동 201호(석남동, 삼경연립)	해당없음			분할측량 예정
2		190-3	답	나대지	413	27	자연녹지지역	이○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255-5	해당없음			분할측량 예정
3		190-5	답	고물상 부지 및 통로	1,524	1,524	자연녹지지역	이○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255-5	해당없음			원정자원, 창대수지, 인천대한상사
4		208-2	답	농경지	1,154	1,154	자연녹지지역	박○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60, 407동 503호(서천동, 서천마을)	해당없음			
5		208-8	답	농경지	246	246	자연녹지지역	박○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60, 407동 503호(서천동, 서천마을)	해당없음			
6		209	답	농경지	717	717	자연녹지지역	박○석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동로 9, 6동 1401호(용현동, 금호타운)	해당없음			
7		209-3	답	농경지	259	259	자연녹지지역	박○석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동로 9, 6동 1401호(용현동, 금호타운)	해당없음			
8		210	답	농경지	861	861	자연녹지지역	박○엽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22번길 27. 102동 205호(산곡동, 경남아파트)	서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 서구 석남동 181-13 (율도로 32),(율도지점)	근저당권	
합계		8필지			5,581	4,982		5명		1명			

영업시설조서

연번	상호 및 업체명	영업소재지	보유시설	사업자등록			소유자		관계인		비고
				업종(업태)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원정자원	신현동 190-5, 250-10, 249-19	계근대, 창고, 사무실, 담장, 포장 등	도매, 제조(재활 용품, 기계제작)	2003.09.15	137-08-82727	장○정	인천 서구 청마로 160, 401동 1402호 (당하동, 풍림아이원아파트)			
2	창대수지	신현동 190-5, 250-10	계근대, 창고, 사무실, 담장 등	도매(폐장판)	2008.11.17	137-01-84880	박○규	인천 서구 원창로 142-2, A동 202호 (신현동, 해성빌라)			
3	인천대한상사	신현동 190-5, 250-10	창고, 사무실, 포장, 담장 등	도소매(설탕, 기타식품)	2000.03.01	131-06-96495	유○옥	인천 남동구 은봉로 288, 704동 102호 (논현동,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			
4	대불공예	신현동 191-6	사무실, 창고, 담장, 대문 등	소매(불상)	2008.04.16	137-11-75605	박○우	인천 서구 백석동 산32			누락

※ 기타 장비 및 자재(물품) 보유 조서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붙임 2]

이의(추가조사 등)신청서

물건구분		물건번호	
------	--	------	--

□ 이의신청내역

소재지	물건의종류	보상 물건		비고 (연락처)
		현물건내역	이의신청 사항	

2015년 월 일

이의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0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08. 0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구민의 의무부담 부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항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안 제4조)
 - 제목 “(권리와 의무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로 변경
 - “의무부담 부여” 가 포함된 기존 조항의 문구를 삭제
 -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 “명예구민을 구 주관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신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6,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구민의 의무부담 부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항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안 제4조)
 - 제목 “(권리와 의무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로 변경
 - “의무부담 부여”가 포함된 기존 조항의 문구를 삭제
 - “명예구민이 구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서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명예구민증”을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호서식”에 의한다”를 “제2호서식”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서등”을 “조서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권리와 의무부담)”을 “(예우 및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5조 중 “받은자는”을 “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특 히 공로가 많은 <u>외국인에</u> 대하 여 수여하는 <u>인천광역시서구명 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 라 한다)</u>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외국인에게</u> 수 여하는 <u>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 민증</u> ----- ----- -----.</p>
<p>제2조(명예구민증수여) ① <u>명예 구민증</u>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u>별지 제1호서식</u>" 을 작성하여 <u>인천광역시서구의 회(이하 "구의회"라 한다)</u>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2조(명예구민증수여) ① <u>인천 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 명예구민증"이라 한다)</u> ----- -----<u>인천광역시 서구 의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 구민증은 "<u>별지 제2호서식</u>"에 <u>의한다</u>.</p> <p>② 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u>별지 제3호서 식</u>"에 <u>의한</u> 수여대장을 비치한 다.</p> <p>③ 공로에 관한 <u>조서등</u> 관계서 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p>	<p>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 -----<u>제2호서식</u>"을 <u>따른다</u>.</p> <p>② ----- ----- -----<u>따른</u> ----- -----.</p> <p>③ -----<u>조서 등</u> ----- -----.</p>

제4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명예구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자는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의 취소) -----
-----받은 사람
은 -----

-.

제6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0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조항 정비 등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항 정비
-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등록 규제 사유 외 개정(삭제)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수수료 개정(등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년 0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에너지과장, ☎ 560-4435, Fax 560-2730)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에너지과장
제출 연월일	2015. . .

기획예산실장 심사를 마침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조례 규제사항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등록규제 사유외 규정 개정(삭제)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수수료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5 - 1049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서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4조 중 “하며, 서구”를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8항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1조”를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를 “제12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
5)(후단 신설 2015. 1. 5)

②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
지 않는 경우

2.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신설>

제14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
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협
의가 성립되지 않은 -----
-----.

1. <삭제>

2. <삭제>

⑦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
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제14조의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① -----제12조
의2에 따라 -----

<p>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시행규칙) -----시행에 ----- -----.</p>
--	--

관계법령 발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4항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1항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0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조항 정비 등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항 정비 및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하는 내용 개정(등록 ⇒ 신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년 0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에너지과, ☎560-4435, Fax 560-2730)에게 서면 또는 전화(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에너지과장
제출 연월일	2015. . .

기획예산실장 심사를 마침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5 - 10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을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제3호 중 “제65조 제8항”을 “제6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7조 제4항”을 “제6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5조 제3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 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67조 제1항”을 “제67조제1항”으로, “제67조 제2항”을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6호”를 “제2조제6호”로,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소방·도로법”을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을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제16조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신고취소)”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신고신청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 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을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2조 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65조 제4항”을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를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10년간”을 “10년 간”으로, “5년간”을 “5년 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7조 제1항”을 “제67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의하여 법 제67조 제2항”을 “따라 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을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0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

례」, 「인천광역시」를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로,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를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제67조 제2항”을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위반으로 인하여”를 “위반으로”로 한다.

제32조 중 “법규가 정하는 바”를 “법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p> <p>1. 법 제3조 제2항 및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2. (생략)</p> <p>3. 법 제65조 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p> <p>4. 법 제67조 제4항에 따른 시</p>	<p>제1조(목적) ----- -----<u>특별법</u>», 같은 법 시행령 ----- -----<u>시행규칙</u>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 ----- -----.</p> <p>1.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u>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p> <p>2. (현행과 같음)</p> <p>3. -----<u>제65조제8항</u> ----- ----- -----</p> <p>4. -----<u>제67조제4항</u> -----</p>

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 제3항에 따른 상점
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 제3항에 따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
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
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
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
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3항 ---

6. -----제9조제3항 -----

7.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제
14조제1항 -----

-----.

4. ----- 「유통산
업발전법」 제2조제7호 -----

-----따라 -----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5. ~ 7. (생략)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

5. ~ 7. (현행과 같음)

8. -----제67조제1항 -----
-----제67조제2항 -----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

-----제8조
에 따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 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생략)
-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5. (생략)

② (생략)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 ----- 기준을 따른다.

- 1. (현행과 같음)
- 2. ----- 「건축법」 · 「소방기본법」 · 「도로법」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 제2조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생략)

②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생략)

3.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생략)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

-----.

1. -----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

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

-----.

1. -----제2조제1항제1호 -----

<p>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p>	<p>2. -----제2조제2항제1호 ----- ----- -----</p>
<p>3. 4. (생략)</p>	<p>3. 4. (현행과 같음)</p>
<p>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p>	<p>5. <u>그 밖의</u> ----- ----- ----- ----- -----</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따른</u>----- -----.</p>
<p>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u>의하여</u> 개설할 수 있다.</p>	<p>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 -----<u>제14조제1항</u>----- ----- -----<u>따라</u>-----.</p>
<p>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p>	<p>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 ----- ----- ----- -----</p>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
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
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
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
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4. (생략)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
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생략)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
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
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

--신고하여야 -----.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

-----신고
를 -----.

1. -----그 밖의 -----
-----신고 -----
-

2. -----신고신청서 ---

3. 4. (현행과 같음)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

-----제12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 -----

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

-----제12조제3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
-----제65조제4항-----

-----.

② -----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

-----조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 -----
-----10년 간 -----

-----5년
간 -----.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
-----1월 말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따라 -----
-----.

② -----
제67조제1항 -----

-----해당 -----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생략)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생략)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③·④ (생략)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따
라 법 제67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현행과 같음)

② -----따

-----다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 -----

-----.

- 1. 2. (현행과 같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위탁관리) ① -----

-----제104조제3항 및 「인
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
장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
역시서구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생략)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
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
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
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조례」, 「인천광역시 -----
-----및 관리 조례」, 「인천
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
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
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67조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반으
로 -----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법규 -----

제33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p>운영현황에 관하여 <u>연1회</u>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u>연 1회</u>----- ----- ----- ----- -----.</p>
<p>③ (생략)</p> <p>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u>의하여</u>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 ----- -----<u>따라</u>----- -----. -----.</p>
<p>② (생략)</p> <p>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시행규칙) -----<u>시행</u>에----- -----.</p>

관계법령 발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0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08. 0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취지

- 지방재정법 개정(15.1.1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업관련 기관(단체)의 보조금(사업비) 지원근거를 직접적으로 마련하여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조항 신설
- 기술개발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건 신설
- 보조금 지원 사업 목록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업지원과, 전화 560-4444, 팩스 560-27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업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술개발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3. 국내 제품인증획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되는 사업

제5조(해외진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되는 사업

제6조(기업관련 단체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법령이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협의체 명의변경 및 구성·운영 등 전면 개정
 - 기존 근거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으로 근거 조항 전환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94) 또는 Fax(560-2738)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법령이「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용어 정비 및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 개정

3.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보장서비스’로 명칭 변경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근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 적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및 하위법령 제정 내용으로 변경 (신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 운영체계 변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구 분	현 행	개 정
1. 대표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확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 -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
2. 실무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3. 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구성 및 선출 - 민간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실무분과의 구성원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들 합의에 의해 분과별 2인 이내 추천과 그 외 영역은 공모를 통해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구성 및 선출 - 민간부문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
4.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체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 -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체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확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 (실무협의체위원장의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
3. 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구성 및 선출, 위원 임기, 위원장 선출, 기능, 구성·운영관련
4. 협의체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회에 대한 사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 상근의 유근직원을 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 간사의 업무, 신분, 보수 등 명시 - (신설) - 위임 전결규정 명시

구 분	현 행	개 정
5. 부칙		단, 대표협의체(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기한을 2015. 12. 31.한으로 두며, 해당조직이 구성되기 전까지 기존 서구사회복지협의체 조직으로 같음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

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입소·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생활보장과장, 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인재육성과장, 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장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의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하며, 관련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분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 ⑤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2와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3분의 1로 구성한다.
-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⑨ 위원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전문위원에서 해촉 될 수 있다.
- ⑩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복지자원연계팀장, 위기가정지원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여성아동팀장, 보육행정팀장, 청소년팀장, 보건행정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실무팀장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공무원(팀장 및 직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실무분과별 해당 당연직 공무원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

② 협의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③ 협의체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며,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7급 3호봉 상당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 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대표협약체, 실무협약체, 실무분과의 구성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15.07.01.]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정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곳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곳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858) 및 FAX(560-27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